노인체육진흥법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21 발의연월일: 2021. 2. 26.

발 의 자:박 정·고용진·김승원

김홍걸・도종환・박상혁

오영환 • 유정주 • 이규민

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준비 없는 고령화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평균12년으로 질병으로 인한 노년의 삶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노년에 대한 권리의 한 부분으로 노인체육을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열망과 욕구 등 달라진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인체육은 기존의 체육종목과 활동방식을 노인들의 정서와 여건에 따라 체육을 새롭게 변형,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체육활동으로 지원해야 함.

이에 노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인체육진흥 법을 제정하여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인체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이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노인체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함(안 제 3조).
- 라. 문화체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마.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노인체육회를 설립함(안 제6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 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해야 함(안 제7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체육진흥 사업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
- 아. 노인체육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안 제9조).
- 자. 노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함(안 제10조).

노인체육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인체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이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2. "노인체육단체"란 노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노인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노인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노인체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노인체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과 협의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대한노인체육회) ①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 한노인체육회(이하 "노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2. 노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연수

- 3. 노인체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책개발
-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 5. 노인체육단체의 조직 및 운영
- 6. 노인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7. 노인체육용 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 8.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노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노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인 지방노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노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노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노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 ④ 노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다.
- ⑤ 노인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⑥ 노인체육회는 제5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⑦ 노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노인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 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노인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체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 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노인체육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9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노인체육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노인체육회에 기부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제10조(감독) 노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체육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

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노인체육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체육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과태료) ① 제1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노인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대한노인체육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 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 의 명의는 대한노인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대한노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노인체육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